

「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」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3. 2.22(금), 평창군수
- 회부일자 : 2013. 4. 26(금)
- 상정일자 : 2013. 4. 26(금) 제193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2차 본회의

2. 제안이유

- 군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많은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바 그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「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」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가. 대상자 인적사항

- (1) 최현길(63세, 남) - 강릉시 정원로 53-9. 前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
교육장

나. 대상자 공적개요

- (1) 최현길 - 시행규칙 제2조 5호 요건 해당자
 - 참교육을 통한 지역 미래인재 육성 및 교육발전 및 학교체육
활성화에 기여

4. 검토결과

- 우리군에 근무했던 기관장의 자궁심 고취차원에서는 명예군민 증서를 수여한다는 것은 어떤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 할 수 있으나 명예군민 증서 수여취지는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군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그 지급대상이 엄격하고 제한되어야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관내 기관장으로 근무했던 이유만으로 지급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판단됨.